

#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개정사항

기술사업화팀

## 가. 개정 사유

- 기술가치평가 용역 금액의 지급 주체를 구체화하고자 함
- 기술가치평가 금액에 기술이전료를 우선적용할 시 기술이전이 성사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

## 나. 주요 내용

- 제17조(기술이전 조건) 2항에서 [별표7]‘기술이전 의향서’을 신설하여 기술가치평가 기술 대상을 명확히하고 기술가치평가 금액의 비용 주체를 발명자보상금 비율에 맞추고자 함
- 제17조(기술이전 조건) 3항에서 기술가치 평가로 결정된 기술료는 협상금액의 참고자료로 활용함

## 다. 신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제17조(기술이전 조건) ① (생략) ② 기술료는 기술이전 대상자와 협상에 의하여 결정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<u>기술가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</u>	제17조(기술이전 조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기술료는 기술이전 대상자와 협상에 의하여 결정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<u>[별표7]기술이전 의향서를 받아 기술가치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비용은 발명자보상비율에 맞추어 발명자와 산학협력단이 나누어 부담한다.</u>	내용수정
1.~3. (생략) ③ 기술가치평가 <u>결정된 기술료는 기술이전 대상자와의 협상에 의한 기술료보다 우선 적용한다.</u>	1.~3. (현행과 같음) ③ 기술가치평가 <u>결과 추정된 기술료를 참고로하여 기술이전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.</u>	내용수정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	
<신 설>	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	부칙신설

